

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22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 14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2023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(안 제2조의2)
- 관계규정 변경에 따른 명칭 수정(안 제6조)
- 부자연스러운 어구 정리(안 제16조)

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6. 20. ~ 2023. 7. 10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4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5】

[붙임 1]

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 을 “2028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제6조 중 “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” 를 “「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” 로 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” 를 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 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관계규정의 준용등)” 을 “(기금의 관리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 을 준용한다.” 를 “「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」 을 적용한다.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문화예술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문화예술과장 이 영 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예술팀장 이 경 영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우 영 진 (행정 2795)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 은 <u>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-----</p>
<p>제6조(기금의 심의)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심의는 「<u>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 제6조에 따른 안산시 <u>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</u>에서 한다.</p>	<p>제6조(기금의 심의) ----- -- 「<u>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」 제6조 --- --<u>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</u>-- --.</p>
<p>제16조(관계규정의 준용등) ① 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<u>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</u>을 준용한다.</p>	<p>제16조(기금의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<u>「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」</u>을 적용한 다.</p>